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2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양부남 · 신정훈
윤준병 · 한준호 · 차지호
이광희 · 김문수 · 정태호
김성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,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등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광역시”를 “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, “도”를 “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적은 서류를 <u>특별시장·광역시</u> <u>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</u> <u>별자치도지사</u>(이하 “시·도지 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 ④ · ⑤ (생략)</p>	<p>-----<u>통합특</u> <u>별시장·광역시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